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15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52758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154 판결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재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종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일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4. 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148,3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48,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차전492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5. ‘C은 원고에게 3,059,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3.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채무의 원리금은 2020. 4. 5. 기준 12,148,337원[= 원금 3,059,845원 + 지연손해금 9,088,492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은 2020. 4. 5.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피고, C, F이 있다(상속지분 E 3/9, 자녀들 : 각 2/9 지분).

라. 위 상속인들은 2020. 4. 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4. 17. 접수 제92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11. 12. 마쳐진 채권최고액 136,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C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03. 1. 24. 망인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명시적 증거가 전혀 없다. ② 피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피고가 송금한 50,000,000원은 2003. 2. 6. 인출되었는데, 위 송금시기 및 인출시기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3. 3. 10.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위 돈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설령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대가로 2020. 4. 16.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 자체가 피고의 이

부분 명의신탁 주장과 배치된다.

3) C의 특별수익, 피고의 기여도 등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C은 1994년경 망인으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5,000,000원, 1999년경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 2000년경 사업자금으로 70,000,000원을 증여받았는바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②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C을 제외한 상속인들인 피고와 E, F은 망인을 돌보고 간병하였으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E, F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더하여 위와 같은 C의 특별수익액, 피고와 E, F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우선 C의 특별수익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1995. 3. 3.경부터 2001. 11. 23.까지 H조합로부터 상당한 돈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대출금이 C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E, F의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3. 1. 24. 망인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05. 6. 10.부터 2020. 4. 29.경까지 망인에게 매달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피고는 2001. 2. 3.부터 2019. 10. 29.경까지 2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각 반복적으로 송금한 사실, E이 망인을 간병하며 망인과 함께 생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하여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에게 특별수익이 있으며, 피고, E, F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I 사이의 친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에 의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의 시가는 20,000,000원[= 90,000,000원 × 2/9]인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시 피보전채권액은 13,693,591원인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16,956,979원[= 20,000,000원 - (13,693,591원 × 2/9), 원 미만 버림]이다. 그리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이자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2020. 4. 5.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2,148,337원[= 원금 3,059,845원 + 지연손해금 9,088,492원]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2,148,337원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16,956,979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2,148,3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2,148,3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등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재천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2층 호 71.1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청북도 재천시 대 3140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1402분의 44.946

